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서당경비로 물품”을 “물품”으로 한다.

제10조 제3항중 “관서당경비로 물품을 매입하였을 때에는 본입물품출납원은”을
“본입물품출납원은”으로 한다.

제11조의 2중 “물품당 단가 50만원이상의 물품”을 “정수물품”으로 한다.

제17조 제4항중 “매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3백만원이상인 물품에”를 “매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5백만원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판매가 가능한 물품에”로
한다.

제24조 제2항중 “중요물품 및 정수물품에”를 “정수물품에”로 하고 “중요물품” 및
“정수물품”을 “정수물품”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관서당경비에 의한 물품매입)		제10조(관서당경비에 의한 물품매입)		
① (생략)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서당경비로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 요구서에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		② 물품		
③ 관서당경비로 물품을 매입하였을 때에는 본임물품출납원은 당해 물품매입에 대한 물품명, 물품분류번호, 수량, 규격, 매입가격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사항을 취합하여 규칙이 정하는 장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③ 본임물품출납원은		
제11조의 2(중요물품의 범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물품은 <u>물품당</u> <u>단가 50만원이상의</u> <u>물품</u> 으로 한다.		제11조의 2(중요물품의 범위)		
제17조(불용품매각) ①~③ (생략)		제17조(불용품매각) ①~③ (생략)		
④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총량중 <u>매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u> <u>단가 3백만원이상인 물품</u> 에 대하여는 영 제9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감정기관"이라한다.)의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		
		매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5백만원이상인 물품으로서 <u>재활용이 가능한 물품</u> 에		

현행	개정 (안)
<p>⑤~⑧ (생략)</p> <p>제24조(물품출납원의 장부) ①(생략)</p> <p>②본임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증 비품출납운동카드, 소모품 대장, 도서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u>중요물품</u> 및 <u>정수물품</u>에 대하여는 비품출납운동카드에 "<u>중요물품</u>" 및 "<u>정수물품</u>"이란 교무인을 적어야 한다.</p> <p>③~④ (생략)</p>	<p>⑤~⑧ (생략)</p> <p>제24(물품출납원의 장부) ① (생략)</p> <p>②..... <u>정수물품</u>에 <u>정수물</u> <u>품</u></p> <p>③~④ (생략)</p>